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 3월 18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과장 오 응 완)

□ 제안이유

-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 1. 14. 법률 제7335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가격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심의하지 않는지 ?	○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개별주택가격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추가로 심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6호
의결 년월일	2005.3.24 (제118회)

제출년월일 : 2005. 3.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 1. 14. 법률 제7335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 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가격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호중 “법 제10조의3의”를 “제12조의”로 하며,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평

가에 관한 사항

6.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토지평가업무담당”을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개별주택
가격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가공시</u>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u>지가공시</u>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⑤ (생략)</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2.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u>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u>부동산가격공시</u> -----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 -----</p> <p>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2. 법 제12조의 ----- -----</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3. 4. (생 략)</p>	<p>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5.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p> <p>6.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p> <p>7. 8.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u>토지평가업무담당·체비지업무관련담당</u>이 되고 서기는 각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p> <p>②(생 략)</p>	<p>제7조(간사등) ①----- -----<u>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u>-----</p> <p>②(현행과 같음)</p>